

《 2018년 12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

연번	홍보자료	도 담당부서
1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구매 및 사용	수질관리과
2	경피용 BCG 백신 회수 조치관련 접종우려에 대한 안내	보건행정과
3	산불방지 예방 홍보	산림녹지과
4	농약허용기준 강화(PLS)-2019년 1월1일 시행	농산물유통과
5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운영 안내	안전점검단
6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실천방법	기후대기과
7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기후대기과
8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안내	예방안전과
9	‘119다매체신고서비스’도민 활용 방법	119종합상황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구매 및 사용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055-211-6754)

□ 정상적인 오물분쇄기 : 인증제품

- 소비자에게 인증제품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 www.gdis.or.kr

□ 불법 판매유형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는 인증제품과 달리 2차 처리기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판매 제품사진>



□ 협조사항

-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매 및 사용으로 공공수역 오염방지

<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조항 >

- ▶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환경부 고시(환경안-07)에 근거하여 일반가정 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제품구매 시 확인할 사항

Step 1 구매일자 또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여부를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ubk.or.kr)에서 확인하세요.



Step 2 구매하려는 인증제품의 외형과 내부가 인증받은 것과 동일합지 확인하세요. 취수통이 없거나 취수통에 거름망이 없거나 또는 미설치되어 음식물 찌꺼기가 전량 또는 20% 이상 아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쇄기 - 변조 예시

- 취수통을 제거하는 경우
- 취수통 내부에 차 분쇄부라 적설되는 배관을 설치한 경우
- 취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는 경우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01 음식물 쓰레기만 넣기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아닌 찌꺼기를 넣을 경우 분쇄기 파손 및 기능저하 등 제품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제품 작동매뉴얼 확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조사마다 다양한 작동원리 및 방법으로 설계 제작되므로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 작동매뉴얼을 숙지하여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03 주기적인 옥내배수설비 청소·관리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옥내배수설비는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배관 막힘,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옥내배수 설비의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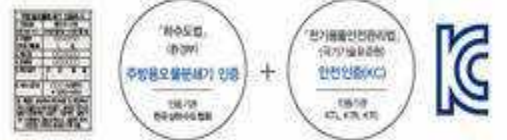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법령 소개



'하수도법, 및 관련규정'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시 저음의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098) 제3조에 근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안전인인증'법, 제3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소)을 의무 취득할 경우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매·사용 가능 지역



경피용 BCG 백신 회수 조치관련 접종우려에 대한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23)

□ BCG 결핵예방접종 백신이란?

- BCG 백신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의 결핵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백신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피내용 BCG(보건소, 무료시행) : 덴마크산 ⇒ 국가예방접종 대상
 - 경피용 BCG(민간의료기관, 유료시행) : 일본산 ⇒ 국가예방접종대상 아님

□ 경피용 BCG 백신회수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18.11.7)

- 회수대상 제품 :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제품명	제조원	수입원	회수사유	제조번호	시중 유통량(팩)	유효기간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일본비씨지제조(일본)	(주)한국백신상사	제조원 출하정지	KHK147	60,397	'18.12.06.
				KHK148	60,551	'19.06.18.
				KHK149	21,177	'19.11.26.

※ 포장형태(1인용, 팩) : 백신 1앰플 + 용제 1앰플(생리식염수주사용제) + 접종용 침

- 회수 사유 : 일본 후생성에서 제조하여 영아에게 접종되는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용액(백신이 아닌 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 초과 비소 검출(0.1ppm→0.26ppm)되어 출하 정지 발표

□ 안전한 피내용 BCG 예방접종을 위한 안내사항

- 이미 경피용 BCG접종을 받은 경우
 - 검출된 비소 최대량은 0.26ppm으로 매일 최대 허용노출량의 1/38에 해당되며, 비소는 대부분 72시간 내 소변으로 배출됨
 - 앞으로 태어날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의 경우
 - 질병관리본부, 도 및 시군(보건소) 홈페이지 피내용 BCG 예방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접종
- ※ 피내용 백신 1바이알로 15~20명분의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건소별 요일제 지정 및 사전 예약 등을 통하여 접종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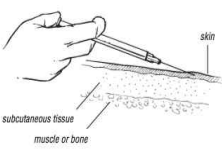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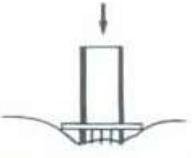

붙임1

BCG 백신(피내용·경피용)의 특징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 기존 피내용 BCG 접종 권고를 지속 유지
- 일반적으로 BCG 백신은 피내접종법으로 접종되고 있으며, 경피접종법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

□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구분	피내용 BCG 백신	경피용 BCG 백신 백신
무료 지원여부	국가예방접종사업용 무료지원	소비자 선택에 의한 유료부담 * 임신예방접종기간 동안 무료
접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에 약 15도 각도로 바늘 사면을 완전히 삽입한 후 백신 0.05ml 주입 * 주사액이 작은 피부용기(5~7mm)를 만들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  

□ 피내용 BCG 접종 후 정상적인 피부병변 변화



1-2주
 접종직후 : 접종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가 30분내 소실
 아무 소견도 없음

2-4주
 접종부위 주사 바늘 자리에 붉은 점이 나타나고 움푹하게 생겨 단단한 결절(10mm)이 된다. 그 후, 결절이 연화되어 농포가 형성된다. 이 무렵에 거드름이나 목 부근의 림프절이 정상 경과로써 커질 수 있음.

4-6주

6-9주
 상층 표피가 터져 고름을 배출하기도 하며 궤양화 함.

9-12주
 3-5mm의 반흔을 남기며 치유
 병변이 아물면서 가피 형성. 이때 가피를 누르면 고름이 나온다. 점차 고름 없는 가피가 형성됨

○ 보건소 접종 실시현황 : 20개보건소

시군명	피내용BCG 접종현황(접종 요일)	비 고
창원시창원	주1회(수요일오전)	
창원시마산	주1회(수요일오전)	
창원시진해	주1회(수요일오전)	
진주시	주2회(수요일, 목요일오전)	
통영시	주1회(수요일오전)	
사천시	주1회(화요일오전)	
김해시	주1회(수요일오전)	
밀양시	주1회(수요일오전)	
거제시	주2회(화요일, 수요일오전)	
양산시	주2회(수요일, 목요일오전)	
의령군	월1회(수요일오전)	
함안군	주1회(수요일오전)	
창녕군	2주1회(수요일오전)	
고성군	주1회(수요일오전)	
남해군	주1회(수요일오전)	
하동군	3주1회(월요일오전)	
산청군	주1회(화요일오전)	
함양군	2주1회(목요일오전)	
거창군	주1회(수요일오전)	
합천군	2주1회(화요일오전)	

○ 위탁의료기관 접종실시 현황 : 5개 의료기관

시군명	피내용BCG 접종실시 의료기관 현황	비 고
창원시창원	한마음창원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CNA서울아동병원	
진주시	미래아동병원: 주2회(화,목)	
	보람소아청소년과의원: 주3회(화,목,토)	

산불방지 예방 홍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 055-211-4823)

□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는

- 산불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입니다.(71%)
-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마시고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잘 관리해 주세요.
-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주의해주세요.
겨울철 난방기, 특히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시고 연통은 T자형으로 설치하시고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습니다.
- 안전 소각 행동요령 2가지 꼭 지켜주세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 받아 실시(마을단위 공동소각)
- 실수로 낸 산불, 강력한 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세요.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055-211-6823](tel:055-211-6823)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

제53조(벌칙)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과태료)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원 / 2차 40만원 / 3차 50만원)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협조해주세요!

3

화목보일러의
다고 남은 재를 합부로
버리지 마시고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잘 관리해 주세요

4

주택지 내 또는
아원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래우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실수로 낸 산불,
강력한 처벌대상

사·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

제53조(벌칙)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과태료)

-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원 / 2차 40만원 / 3차 50만원
-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영농부산물
쓰레기
래우지 마세요



www.forest.go.kr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1

겨울철 난방기,
특히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

화목보일러의 연통(굴뚝)은
T자형으로 설치하시고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농약허용기준 강화(PLS)-2019년 1월1일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055-211-6444)

□ 제도개요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잔류농약허용기준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농약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농약	① CODEX(국제식품규격)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u>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u>

-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국내 생산 농산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도입
-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또는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확인 가능

□ 제도 추진경과

- 최초 PLS 도입 계획 발표(식약처) : '11. 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도입 고시 : '15. 10.
- 1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16.12.31. 시행)
-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도입 행정예고 : '17. 7.
- 나머지 농산물 전면시행 : '19. 1. 1. 예정

□ 시군 협조사항

- 도민들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추진
- 시군, 읍면동 행정망 활용 PLS 교육·홍보 전파
- 시군보, 읍면동 소식지 등에 PLS 전면시행(2019. 1. 1.) 홍보 철저



잠깐!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작물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농약잔류허용기준 (0.01mg/kg) 초과로 수확 농작물 판매 불가
- ※ 2018년에 생산되어 2019년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제도가 적용됩니다.



!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시 해당 농산물 폐기나 출하연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남도

문의 : 농촌진흥청(1544-8572)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여 2019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농약사용 기준(PLS)에 대비하십시오.**

농약,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기



• 농업인 농약사용 실천 •

-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 검색은 →

<http://pis.rda.go.kr>

검색



경상남도

문의 : 농촌진흥청(1544-8572)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여 2019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농약사용 기준(PLS)에 대비합시다.

2019년 1월 1일 시행
농약허용기준 강화(PLS)



이것만 지켜주세요!

-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3 농약 사용 시기·횟수·용량·희석배수 준수하기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점검단 ☎ 055-211-2763)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운영 안내입니다.

□ **운영기간** : '18. 10월 ~

□ **운영방법** : 연중 도민 안전점검 신청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주택, 교량, 옹벽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 필요시설

- (건축물)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단, 단독주택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주택

- (시설물)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 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

※ 세부 점검대상 붙임 참조

□ **점검반** : 도 및 시·군 전문 안전점검단

□ **주요내용** : 안전성 확인 및 안전관리 컨설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군 안전총괄부서 방문 및 팩스 신청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점검대상 1부.

2.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점검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건 축 물	주 택	◦ 단독주택 ◦ 4층 이하 공동주택(연립포함)	※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만 해당	
	판매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연장	◦ 연면적 5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 연면적 5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 연면적 1,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 연면적 1,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 연면적 5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시설	◦ 연면적 3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 휴게시설	◦ 연면적 3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등	
운동시설	◦ 연면적 5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시 설 물	축대·옹벽	◦ 높이 5m이하 길이 100m 미만	축대·옹벽	
	교 량	◦ 도로교량 연장 20m 미만	교량	

※ 건축물 :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시설물 : 준공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실천방법 홍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055-211-6694)

□ 도민 여러분의 작은 참여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농업잔재물 퇴비로 활용하기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므로 퇴비로 활용합니다.

2. 공터에 나무 심기

나무 한 그루는 매년 11.8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생활 주변에 나무를 심읍시다.

3. 실내에 식물 키우기

실내 면적 대비 2~5% 정도 식물을 키우면 미세먼지 양이 약 20% 감소합니다.

4. 조리시 환기하기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므로 환기를 하고 주방후드 필터를 청소합니다.

5. 실내 미세먼지 제거하기

실내에서는 물걸레질로 청소를 하고 진공청소기는 환기를 한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6.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83%를 줄이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7.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도로청소차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8. 친환경 자동차 타기

친환경자동차는 미세먼지, CO₂,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 효과입니다.

9. 공회전 하지 않기

승용차가 10분 공회전을 하면 1.6km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됩니다.

10. 3급 하지 않기(급출발·급가속·급감속)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면 연료가 소모되므로 경제속도(60~80km/h)로 운전합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055-211-6694)

□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 이후
- 시행지역 : 발령요건 충족 시·도(시·도 조례로 시행 준비 중)

< 발령요건 :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시 >

- 당일 농도 $50\mu\text{g}/\text{m}^3$ 초과하고 다음날 $50\mu\text{g}/\text{m}^3$ 초과예보 시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다음날 $50\mu\text{g}/\text{m}^3$ 초과예보 시
- 다음날 $76\mu\text{g}/\text{m}^3$ 초과예보 시
- * '17년도 시행일 추정 : 서울 11일, 인천 9일, 경기 18일, 부산 3일, 울산 5일, 경남 1일

- 제한시간 :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부터 21시까지
- 제한대상 : 시·도 조례로 선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08년 이전 경유, '88년 이전 휘발유/LPG 등)
 - 차량 2부제 등
- ※ 적용제외 : 영업용, 긴급차, 장애인 사용차, 공용수행차, 전기차 등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 환경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53) 안내 중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문에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2019년 2월 15일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자동차운행제한 안내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 지원 시·군 적극 홍보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안내

(자료제공: 경남도청 예방안전과 ☎ 055-211-5416)

❖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이란?

필로티 건물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도내 필로티 건물 화재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 (기간) 2019. 1. 1. ~ 7. 31. ※'18. 11~12월 : 점검설계 및 사전준비·홍보

○ (대상/조사반) 11,016개동* / 36개반 108명(소방 35, 건축 35, 전기 35, 안전점검단 3)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 소방·건축·전기 합동조사반(35개반 105명) : 10,866개동

–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점검단(1개반 3명) : 150개동(24층 이상 공동주택)

○ (방법) 체크리스트 활용 소방, 건축, 전기 합동조사(소방서별 조사반 운영)

○ (조사내용)

– 소방 : 법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피난용이성,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 건축 : 가연성 내외장재, 필로티 불법 증축, 용도변경, 출입문 위치·재질 등

– 전기 : 화재우려가 높은 공용부분(주차장 전등, 슬라이딩 도어) 전기시설 중점확인

□ 협조사항

○ 점검당일 점검입회 및 입주자 점검안내(점검일 별도 안내)

'119다매체신고서비스' 도민 활용 방법

(자료제공: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055-211-7932)

❖ “119다매체신고서비스”란?

음성전화 신고자 외에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영상통화, SMS문자, 모바일앱,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19종합상황실에 긴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활용방법

○ 119신고앱 :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신고

- 신고자의 GPS를 포함한 위치정보 전송으로 정확한 신고지점 출동 가능



○ SMS·MMS 신고 : 청각장애인 등 음성을 통한 신고가 불가능할 시 활용 가능

- 수신번호에 119입력 후 문자신고 전송

○ 영상통화 : 영상을 통해 재난상황 등 전송 가능

- 전화번호에 119입력 후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 영상통화 신고 가능

○ 외국인 119신고 시 3자 통화를 통한 신고접수

서비스제공처	전화번호(이용시간)	이용언어
B,B,B 코리아 통역서비스	1588-5644 (24시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24시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러시아어,태국어, 몽골어, 네팔어